

자활기업의 사회적경제조직 유형과 특성 비교 분석*

김 경 휘** · 백 학 영***

요약

본 연구는 자활기업의 사회적경제조직 유형을 단일유형 사회적경제조직과 복수유형 사회적경제조직으로 구분하여 자활기업의 특징을 비교분석을 하였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6년 자활기업 전수 조사 자료와 2015년 자활기업정보등록시스템 자료를 결합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대상인 1,760개의 자활기업 중 1,367개소(77.2%)를 제외한 393개소(22.3%)가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전환되었다. 둘째,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전환된 조직들은 하나의 사회적경제조직 형태뿐만 아니라 2~3개의 사회적경제조직 형태를 동시에 복합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여러 형태의 사회적경제조직 형태를 유지한 자활기업(plural-type social economy organization)이 자활기업 형태만을 지속해서 유지한 조직(single-type social economy organization)에 비해 일자리 창출 수 및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참여율 그리고 매출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를 보였다.

주요어: 사회적경제,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 본 연구는 2017년도 강원대학교 대학회계 학술연구조성비로 연구하였음(관리번호 620170083).

** 제1저자, 예수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부교수(ohomimi@jesus.ac.kr)

*** 교신저자,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hywhite@kangwon.ac.kr)

1. 서론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이후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국가의 공공부조 수급권을 얻게 되면서 출발한 자활사업은 이후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생활에 필요한 소득 보장과 함께 근로 능력을 향상하고 근로 기회를 통해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자활사업이 목표하는 바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자활기업(2012년 8월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명칭 변경, 명칭 변경과 관계없이 자활기업으로 통일하여 서술하였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활공동체 사용)을 형성하고, 경제적 공동체가 장기적으로 시장에 정착시키고자 하였다.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보건복지부는 사회·경제적 여건과 인구·가구 특성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기초생활 보장 자활급여 기본계획(2018~2020)’을 세웠다(보건복지부, 2017a). 기본계획은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자활사업을 확대, 취약계층 자립지원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6년 말 기준, 차상위계층 이하 빈곤층 약 4만여 명이 전국 2,250개 자활사업단에서 속해 있고(보건복지부, 2017b), 자활사업단이 독립해서 독자적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활기업은 2017년 12월 현재 1,092개(11,209명 고용)가 운영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8).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약 300여 개의 예비자활기업을 지정해(예비) 자활기업을 2020년 1,800개까지, 2022년 2,100개까지 확대하여(보건복지부, 2017b; 보건복지부, 2018) 빈곤층의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자활기업 일자리에 31,500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가 자활기업의 확대를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저에는 자활 지원체계 개편(2019년 7월 16일 중앙자활센터를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전환하고 광역자활센터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위탁체로 통합 등)과 지역사회에서 자활기업을 사회적 경제조직의 협력체로 세우겠다는 것이다.

자활사업은 지역에 기반을 둔 빈민운동으로부터 그 역사적 뿌리를 두고 출발하였다(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2006; 이인재, 2006). 1970년대 후반 이후 지역 빈민운동을 중심으로 자조적 생산공동체·협동조합의 시도가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이 활발해진 1990년대 초에 시작된 ‘생산공동체’ 운동이 직접적인 출발점이 되었다. 그리고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빈민 지역 운동 진영의 생산공동체 운동은 경제적 자활 운동이라는 차원만으로 환원시킬 수 없는 공동체 운동의 지향을 하고 있었다.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근로 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에 대해서는 공공근로 민간위탁 사업과 유사한 형태로 당시 시범 운영되던 자활후견기관이 조건부 수급자를 중심으로 하여 저소득층의 노동능력 유지·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

도록 함으로써 자활사업이 본격화되었다. 자활사업의 역사를 보면, 자활사업은 사회적경제를 지향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자활사업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자활공동체를 형성하고, 경제적 공동체가 장기적으로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지원체계를 통해 자활공동체를 육성하는 것이었다. 초기 '시장진입'이라는 개념으로 표상된 자립된 경제조직으로 나아가는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자활사업의 전개 과정에서 자활사업단이나 자활기업의 사회적경제 지향성은 약화하였고, 제도적으로 자활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제도적 경향과는 달리 자활사업 현장에서는 자활기업의 사회적경제조직으로의 전환은 계속되고 있다. 다만 이들 자활기업이 자활사업의 공동체 운동성을 지향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자활사업의 평가 측면에서 볼 때, 지역자활센터가 자활사업을 잘 운영하고 있는가를 평가할 때 항상 언급되는 것은 자활기업의 수나 고용된 사람 수를 얘기한다. 이 지표는 자활사업 시작 이후 현재까지 평가의 중요한 척도로 활용되고 있다. 자활사업 참여자가 자활근로사업단을 거쳐 일정 정도의 조건과 수익이 발생하면 자활기업으로의 이행 또는 변신을 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자활기업은 자활기업의 모든 노력과 자원의 결정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자활기업이 자활사업 참여자의 중요한 자활의 통로로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고용을 창출하고 지속시켜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백학영·조성은, 2012).

자활기업이 지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활사업 성공의 지표이자 잣대로 활용됐지만, 끊임없이 자활기업이 과연 내실 있게 운영되고 지속할 수 있는 형태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활연구에서 자활기업의 특성이나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는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자활기업정보시스템 자료를 활용하여 자활기업의 현황을 분석한 연구(김경휘, 2016)가 진행된 바 있다. 그렇지만 최근 자활기업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는 부재하며, 특히 자활사업이나 자활기업의 정책 기초의 변화를 반영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자활사업의 정책적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자활기업의 사회적경제 유형을 분석하고 사회적 유형에 따라 기업의 일반적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사회적경제조직 유형 비교에서는 단일형태의 자활기업과 다른 사회적경제조직 형태가 결합한 복합적인 자활기업 유형 사이의 특성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사회적경제조직으로서 자활기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사회적경제의 의미와 사회적경제조직의 구조적 특성

(1)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서 사회적경제의 의미와 사회적경제조직의 형태

본래 사회적 경제는 프랑스, 벨기에를 중심으로 한 불어권 지역에서 사용되던 개념이었으나, 차츰 유럽 전역에서 유사한 조직형태를 지칭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확대되었으며, 20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유럽연합의 발전과정에서 사회발전전략, 특히 지역개발전략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주요한 행위자로서 사회적경제가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관심을 받게 되었다. 유럽연합뿐만 아니라, OECD에서도 LEED (Local Economic and Employment Development)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사회적 경제에 관련된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에 대한 개념 정의와 분석, 그리고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다(Roelants, 2002; 장원봉, 2006에서 재인용).

그렇지만 사회적경제에 관한 개념은 학문적으로 합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이은선·석호원, 2017). 그런데도 사회적경제가 ‘호혜와 연대를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적 활동’이라는 데는 동의가 되는 지점이다. 사회적경제는 호혜와 연대를 바탕으로 하므로 공동체의 복원, 지역 공동체 활성화의 유용한 수단이다.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의 확산에 따라 2014년부터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사회적경제의 정의, 사회적경제조직의 형태, 담당 부처 등에 논의가 분분하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3개의 사회적기본법안이 발의되었지만, 법안에 반대하는 진영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법안에 대한 논의는 이전과 다른 경제 이념화, 시장질서 파괴와 같은 경제 논리가 아닌 이념 논쟁으로 논의가 흘러가(김학실, 2017), 결국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20대 국회에서는 2019년 4월 현재 3개의 사회적기본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먼저, 윤호중 의원의 대표 발의안(2016. 8. 17)에서는 사회적경제를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상과 지역순환경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등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이 호혜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둘째, 유승민 의원 대표 발의안(2016. 10. 11)에서는 사회적경제를 “구성원 상호 간의 협력과 연대, 적극적인 자기혁신과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확충, 복지의 증진,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의 발전, 기타 공익에 대한 기여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경제활동”으로 정의한다. 마지막으로, 강병원 의원의 대표 발의안(2019. 3. 6)에서는 사회적경제를 “사회 구성원 간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독립적이고 자율적이며 민주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양극화 해소, 지역경제 선순

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통합과 공동의 이익 추구를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으로 정의한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 사회적경제조직 정의는 배경, 목표나 가치, 운영원리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사회적경제조직에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자활기업과 더불어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는 조직, 금융기관 성격이 강한 조직(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등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적경제조직에 어떤 조직을 포함할지에 대한 논의는 부분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자활기업과 함께 자활기업과 주되게 연결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에 주목하고자 한다.

(2) 사회적경제조직의 구성과 지원 특성

한국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다양한 유형으로 등장하였다(이은선·석호원, 2017). 2000년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지원, 2007년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2011년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지원, 2012년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등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자활기업은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자활공동체'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창업 지원 정책의 하나가 되었다. 자활공동체는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자활기업은 2017년 12월 현재 1,092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2022년 2,100개까지 확대하여 총 고용수를 11,000명에서 31,5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2018). 2012년 8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자활공동체는 자활기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자 등록상 2인의 공동사업자에서 1인 이상 사업자로 변경하는 등 자활기업 설립 요건 완화하였다. 그리고 2018년 7월에는 자활 활성화 대책으로 지원 대상 자활기업 요건 완화, 예비자활기업 육성, 자활기금 적극 지원 계획이 발표되었다.

자활기업은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 사업자로 설립되며, 조합형태로 설립을 추진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활기업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1/3 이상이어야 하며, 수급자는 반드시 1/5 이상이어야 한다. 2019년 상반기에는 총 고용인원이 5인 이상이고 창업 이후 5년이 지난 법인 형태의 자활기업을 사회형 자활기업으로 인정하고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자활기업이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취약계층을 전체 고용인원의 30% 이상 고용한 경우 자활기업으로 인정하고 이들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자활기업은 창업 시 자활근로사업단 구성 인원의 자활기업 참여비율에 따라 적립된 창업자금의 50~100% 범위에서 차등적인 창업자금을 지원받고, 자활기업에 참가한 수급자와 취약계층은 최대 5년까지 한시적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시행 이후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주요 형태로 등장하였다. 사회적기업은 영리기업과 비영리 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먼저 추구하면서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과 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을 말한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이후 사회적기업의 수는 2019년 3월 현재 2,524개소가 인증을 받았고 그 중 2,154개소가 유지 중이며, 예비사회적기업도 986개소에 달한다(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9). 사회적기업의 수적 증가와 더불어 지방정부에서 사회적기업 육성과 지원 관련 조례나 규칙 제정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019년 4월 21일 현재 지방정부의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구매촉진, 판로지원, 활성화, 기금설치, 지원센터 운영 등과 관련 지방정부의 조례나 규칙은 총 191건이다(행정안전부, 2019).

사회적기업육성법은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조직형태가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이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의 참여근로자 인건비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 일부(9.36%)를 최대 3년까지(예비사회적기업은 최대 2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2016년 말 기준 10,615개 협동조합이 신고·인가되었으며, 이 중 일반협동조합 9,954개, 사회적협동조합 604개, 연합회 57개가 운영되고 있다(기획재정부, 2018).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하면 된다. 협동조합기본법에서 정한 인건비나 운영비 지원은 따로 없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하여 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마을기업은 2017년 말 현재 1,442개소에서 17,438명을 고용하고 있고(행정안전부, 2018), 마을기업은 사업비와 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비로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수 있는데, 이때 마을기업은 일정 금액 이상을 자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¹⁾ 그리고 마을기업 운영 차수에 따라 사업비는 1차 년도 5,000만 원 한도, 2차 년도 3,000만 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자립을 위한 교육, 경영 컨설팅, 박람회 개최, 판로지원, 멘토링, 마케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여러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목적이나 설립 요건, 정부의 지원 등에 차이가 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설립 요건을 갖출 때 여러 가지 형태의 사회적경제조직을 인증(인정)받거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2) 사회적경제와 자활기업

(1) 사회적경제 지형과 자활기업

역사적으로 볼 때 자활사업은 유럽의 사회적 경제와 유사한 특징으로 출발하여, 제3 섹터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형성의 유럽의 사회적 경제와 달리 정부의 자활사업 부문에서 성장하였다(홍성우, 2011).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시행 이후, 제도화된 노동 연계복지 차원의 자활사업에서 자활기업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발전의 주된 경로로 설정하게 되었다.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무 부처와 사회적기업을 주도하고 있는 부처가 다를지라도 기본적으로는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용을 창출해 주고, 이들로부터의 노동 제공에 따른 반대급부로서 인건비 등을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사회적 고려의 대상에서 탈피시키려는 유사한 정책적 목표를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다(홍성우, 2011).

신명호 외(2012)는 2000년에 국민기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정부의 공공부조 정책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기까지 자활사업은 협동조합 운동의 목적으로 여겨졌으며, 현장에서는 대략 2000년까지도 노동자협동조합운동으로서 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평가한다. 그 근거로는 자활공동체(현 자활기업)는 명칭에서부터 노동자협동조합의 다른 이름이었던 생산공동체의 계승자임을 드러내고 있고, 창업 시 정관 작성과 공동창업이라는 형식도 노동조합운동의 유산

1) 마을기업이 사업 수행을 위하여 마을기업 회원들이 출자한 금액의 합 보조금이 5,000만 원인 경우, 자부담액은 1,000만 원 이상 (이 경우 총사업비 6,000만 원), 보조금이 3,000만 원인 경우, 자부담액은 600만 원 이상 (이 경우 총사업비 3,600만 원).

이며, 많은 자활기업이 시도하는 창업 시 출자와 민주적 의사결정 시도 역시 협동조합 운동의 유산이라고 평가한다. 이와 더불어 자활공제조합, 지역사회에서 노동경제 구축을 시도했던 사례(사회경제 네트워크, 로컬 푸드의 조직화,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 과거 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의 실무자들이 참여했던 (가칭)한국노동자연합회의 조직화 등은 자활기업의 노동자협동조합 성격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협동조합에 대한 활발한 고민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으로 자활사업이 공공부조 정책에 포함되면서 약화하기 시작했다고 평가된다(김정원, 2012).

사회적경제 영역의 확대는 기존 제3 섹터, 비영리 섹터, 시민사회 섹터의 확대와 융합 현상을 배경으로 한다(김의영·임기홍, 2015). 사회적경제 영역 확대는 국가/정부, 시장/기업, 사적공동체 영역과 중첩된 제3 섹터 영역이 확대되는 한편 전통적으로 비정부, 비영리 부분으로 이해되었던 영역에서 정부-기업-시민사회 간 경계를 넘나들면서 나타나는 '섹터 간 융합 현상'에 기인한다. 김의영과 임기홍(2015)은 한국도 섹터 간 융합 현상 즉, '영리-비영리 융합 현상', '정부-비정부의 융합 현상', '서비스-옹호 활동의 융합 현상'이 나타나면서 사회적경제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한국의 사회적경제는 저변이 협소하지 않고,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제3 섹터, 비영리 섹터, 공공 섹터에 기반을 둔 조직들이 다수 존재하고, 영리 추구를 제일의 목표로 하는 기업 섹터에 기반을 둔 조직들도 등장하는 특징이 있음을 보여준다. 1990년대 후반 이후 한국의 사회적경제는 외형적으로 크게 확대되었다(김정원, 2017).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정부는 발전주의 이념을 중심으로 정책을 도입, 시행하고, 시민사회는 사회적경제를 매개로 국가 정책에 개입하는 장을 확장해나가고 생활세계의 장을 다양하게 조직화하면서 사회적경제 영역은 더욱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이은선과 석호원(2017)은 사회적경제를 '호혜와 연대를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적 활동'으로 정의하고, 조직 설립의 목적성, 조직이 생산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수혜 범위, 시장성을 기준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을 유형화하였다. 그 결과 퍼지셋 이념형은 8개 유형(통합적, 준통합적, 목적지향, 준목적지향, 기업형, 준기업형, 공공부조형, 기타형 사회적경제조직)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자활기업은 목적성과 시장성이 강한 준통합적 사회적경제조직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자활기업은 조직의 목적성에 있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므로 사익보다 공익 추구의 성격이 강하고 목적성은 협동조합보다 높은 수준이며, 조직의 설립 목적 자체가 자활기업 설립을 통한 조직의 수익 추구이므로 시장성이 협동조합에 비해 높다는 것이다. 다만 수혜 범위에서는 해당 기업의 구성원에 극히 한정되어 있으므로 수혜의 범위는 협동조합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것으로 평가한다.

이경미와 정원오(2017)는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분석단위로 자치구의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 역량과 민간의 네트워크 역량을 기준으로 서울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유형화하였다. 그 결과

그 유형은 민관 협력형, 민간주도형, 자치구 주도형, 주체 빈약형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자치구를 분석단위로 하고 있어 사회적경제 생태계에서 자활기업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제약이 있지만, 자활기업이 사회적경제 생태계에서 적극적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자활사업 역량과 지역자활센터와 자활기업의 네트워크 역량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자활기업 연구는 아니지만, 최근 조직유형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한 지역자활센터에 관한 한 연구는 지역자활센터가 공공부조 사업 수행조직으로 인식되어 지역의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데 제약이 많았고, 지역자활센터가 사회적경제 조직임을 설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고한다(백학영·김경휘·한경훈, 2018). 그러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후 지역사회 내에서 자활사업의 인지도 향상과 지역사회 협력이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지역사회의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혹은 생태계에서 많은 자활기업이 사회적경제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주체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자활기업의 사회적경제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그동안 자활기업에 관한 연구는 자활기업의 경제적 성취나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연구(이상은·김세진, 2007; 백학영 외, 2010; 황보람·부아름, 2011), 여성주의 시각에서 자활기업 참여자의 자활경험 연구(황정임·송치선, 2007), 자활기업의 사회적경제조직으로서 특성이나 전환 등에 대한 연구(이현성, 2001; 한상진, 2006a, 2006b; 이인재, 2006; 황미영, 2007, 2009; 백학영·조성은, 2009; 홍성우, 2011; 김정원, 2012, 2018; 신명호 외, 2012; 이현주, 2015, 2016a, 2016b; 설지원·신원식, 2015)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 측면의 자활기업 연구들은 자활기업을 생산공동체, 생산자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과 연결하여 사회적경제조직으로서 자활기업을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리고 자활기업의 발전의 일 경로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을 상정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자활기업의 사회적기업 전환 가능성에 대한 백학영과 조성은(2009)의 연구에서 당시 자활기업의 45.1%가 사회적기업을 지향하고 있었으며, 26.6%는 향후 1~2년 사이에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사회적기업을 지향하는 공동체 중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공동체는 8.9%에 그쳤다. 그리고 신명호 외(2012)는 자활기업이 협동조합으로 단시일 내에 전환할 수 있는 수요는 10% 정도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자활기업이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전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자활기업이 사회적기업을 지향하고 전환을 준비할 때 가장 큰 장애 요건으로 나타난 것은 이윤의 사회적 분배 기준이었는데 참여자들이 자체의 경제적 이익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가치 인식과 정당성 동의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꼽는다(백학영·조성은, 2009). 그리고 많은 자활기업의

취약한 경제적 성과가 한계로 작용하고, 참여자의 낮은 인적역량, 자활기업의 낮은 시장경쟁력, 열악한 경영조건, 변화에 대한 저항, 행정 우선주의 폐해, 자본 취약성 등도 자활기업이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발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평가된다(이현주, 2015, 2016a; 김정원, 2012, 신명호 외, 2012).

설지원과 신원식(2015)은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자활사업의 방향으로 자활사업은 참여자가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과 참여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경제 교육을 통해 자활사업의 지역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현재 참여자들의 취·창업을 통한 탈빈곤이라는 자활사업의 단기적인 성과목표 추진보다 참여자 교육과 사회적경제조직의 합리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한 장기적인 추진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정원(2008)은 노동통합사회적기업의 이념형을 기준으로 해서 자활기업의 현실을 진단하고 과제를 제시한다. 자활기업은 노동통합사회적기업으로서 제한적인 성격을 지니는데, 이는 ‘국가의 개입’을 대가로 한 ‘빈곤 문제의 개인화’와 ‘사회적기업의 시장 지향’이라는 메커니즘이 자활기업에서 작동하고 있는 데서 찾았다. 이러한 분석에 근거해서 자활기업의 사회적 목적 제고와 사회적 소유의 도모를 화두로 던지고 그 내용을 제시한다. 사회적 소유를 강화하는 시도는 사회 목적을 분명히 할 때 좀 더 쉬워진다고 강조한다.

자활기업의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전환이나 발전은 자활기업 활성화에서 중요한 정책 방향이지만 최근 자활기업의 실태나 특성, 발전 지향 등에 관한 연구는 일부에 불과하다. 그중에 최근 자활기업의 업종, 기간, 참여자 수, 재정 운용, 사업유형, 사회적경제조직유형 등 자활기업 전체적인 현황에 대한 기술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김경휘, 2016). 이 연구에서 1,760개 자활기업을 분석한 결과, 사업유형은 개인사업자가 1,108개, 유한회사 86개, 주식회사 206개, 협동조합 125개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이 178개, 예비사회적기업이 97개, 마을기업이 6개, 부처/지역형 사회적기업 32개였으며, 이 형태는 상호배타적이지 않고 사회적기업이면서 마을기업인 자활기업도 존재하였다.

즉, 적지 않은 자활기업이 자활기업 자체로서 사회적경제조직임에도 다른 사회적경제조직 형태를 덧입는 독특한 사회적경제조직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자활기업이 다른 사회적경제조직 형태를 추가로 취하게 되었는지를 고민하게 된다. 먼저, 자활사업은 역사적으로 생산공동체나 협동조합의 목적으로 여겨졌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전이나 이후에도 자활사업의 핵심이었던 자활근로사업단은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전환을 목표로 삼아왔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활기업 외에 여러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설립과 지원을 하게 되면서, 자활기업이 다른 사회적경제조직 형태를 추가할 수 있는 제도적 가능성이 증가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으로 많은 자활기업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으며, 그 이후 협동조합, 마을기업의 확대로 적지 않은 자활기업이 추가적인

사회적경제조직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공공부조 제도 안에 규정된 자활기업이 그 자체로 사회적경제조직으로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그렇지만 김경휘(2016)의 연구에서 이중 혹은 삼중으로 중층화한(layered) 자활기업의 현황이나 특성을 할인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활기업 단일형태의 자활기업과 다른 사회적경제조직 유형이 결합한 복합적인 자활기업의 유형 사이의 자활기업의 특성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자활기업의 특성은 자활기업 사업특성, 참여자 특성, 경제적 특성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3.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의 목적은 자활기업에 대한 심층 분석하여 자활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제언을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활기업의 최신 정보를 활용해야 함에도 연구는 부득이하게 2015년 자활기업정보등록시스템 자료와 2016년에 실시된 전국 자활기업 전수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는 본 연구가 이루어진 시점인 2019년 현재 최신 자활기업정보등록시스템 자료에 대한 접근 및 자료 확보하는 것이 보건복지부와 중앙자활센터의 여건상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전국의 자활기업을 파악할 수 있는 전수조사 자료는 2016년 자료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진이 접근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중앙자활센터로부터 확보한 2015년 자활기업정보등록시스템 자료와 2016년에 실시된 자활기업 전수조사 자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더 최근의 자료를 사용하지 못한 부분은 본 연구가 갖는 중요한 한계점 중의 하나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자활기업에 대한 실태분석 및 자활기업으로 시작하여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경제조직 형태를 함께 유지하고 있는 자활기업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2016년 자활기업 전수조사 자료와 2015년 자활기업정보등록시스템 자료를 결합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두 자료를 사용하는 이유는 2016년 자활기업 전수조사 자료는 자활기업의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으로의 이행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만, 자활기업의 경제적 성과(매출, 인건비 등) 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중앙자활센터에서 관리하는 2015년 자활기업정보등록시스템의 매출 정보 등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두 자료가 갖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생성 과정을 거쳤다. 첫째, 중앙자활센터에서 공식적으로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는 자활기업의 수와 본 연구에서 사용한 2016년 자활기업 전수조사 자료의 사례 수와 숫자나 내용이 일치한다는 것을 중앙자활센터를 통해 확인하였다. 둘째, 2016년 현재 자활기업 1,760개 업체를 기준으로 하고, 이 자료에서 각 자활기업의 고유 사업자 번호와 2015년 자활기업정보등록시스템 자료의 사업자 번호를 대조하였다. 두 자료를 대조한 결과, 2015년 전산에 존재하는 955개 자활기업이 2016년 자활기업 전수조사에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활기업정보등록시스템에 등록된 955개 기업은 자활기업의 매출 등의 경제적 성과 정보를 전부 또는 일부 포함하고 있다. 두 자료에 중복된 자활기업은 955개로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1,760개 자활기업으로 구성된 2016년 자활기업 전수조사 자료에 경제적 성과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2015년 자활기업정보등록시스템 955개 자활기업의 경제적 성과 정보(매출, 지역)를 매칭하고 병합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 1,760개 기업체의 정보와 955개 기업의 경제적 성과 자료가 병합된 최종 분석 자료를 생성하였다.²⁾

2) 분석대상의 정의

본 연구에서는 자활기업의 기본적인 특성과 함께 자활기업으로 시작해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경제조직의 법적 성격을 가진 자활기업의 특성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분석대상의 정의다. 현재 분석 자료에는 1,760개의 자활기업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활 근로사업단에서 자활기업으로 전환하여 데이터의 마지막 관찰 시점인 2016년 현재 ‘자활기업’을 유지하는 조직과 그 외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과 같은 두 개 이상의 법적 기업 지위를 가진 자활기업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활 근로사업단에서 자활기업으로 전환하여 2016년 현재 자활기업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기업에 대해 ‘단일유형 사회적경제조직(single-type social economy organization)’이라고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다음으로 처음에는 자활기업으로 시작했다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과 같은 사회적경제 지위를 함께 유지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복합유형 사회적경제조직(plural-type social economy organization)’이라고 조작적 정의를

2) 본 연구에서 2015년과 2016년의 자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본 자료가 보건복지부와 중앙자활센터 내부 자료로서 최근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음.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자료는 2017년 자활기업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중앙자활센터의 협조를 받아 원자료를 받고 연구목적에 맞게 2차 자료를 생성한 것임. 이 부분은 본 연구가 갖는 중요한 한계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하였다. 여기서 ‘복합’이란 뜻은 자활기업이라는 형태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활기업이면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이라는 법적 조직 지위를 동시에 함께 유지한다는 것으로서, 자활기업의 고유 조직에 여러 형태의 조직이 함께 ‘뭉치워진다’는 의미를 말한다. 따라서 ‘복합유형 사회적경제조직’은 자활기업을 기본으로 하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형태를 복합적으로 취하고 있는 자활기업을 말한다.³⁾

3) 분석변수

본 연구에서 최종 구성한 자료에는 두 가지 자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시된 다음의 표를 살펴보면 2016년 자활기업 전수조사 자료와 2015년 자활기업정보등록시스템의 주요 변수들을 제시하였다.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자활기업의 특성에 대해서는 자활기업 전수조사 자료를 활용하였고,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의 경제적 성과로 볼 수 있는 매출액 자료는 2015년 자활기업정보등록시스템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1] 분석변수

자료 구분	주요 변수
2016년 자활기업 전수조사 자료	시도, 설립연도, 사업유형, 폐업여부, 사업유지기간, 실무자 참여여부, 참여자 성별, 연령, 수급형태, 한시적인건비-수급자 수, 한시적인건비-비수급자수, 전문가인건비 지원인원, 사업자금융자금, 창업자금, 전세점포임대, 사업자금이자보전, 기계설비비, 시설보강비, 한시적인건비금액-수급자, 한시적인건비금액-비수급자
2015년 자활기업정보등록시스템 자료	자활연계매출액, 외부매출액

4) 분석내용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연구와 양적연구를 병행하였다. 먼저 문헌연구에서는 자활기업 관련한 기존 논의 통해 그간의 논의 흐름에 대한 주요 내용 파악하였다. 더 나아가 선행연구를 통해 기존에 이루어진 분석 자료에서 사용된 주요 분석변수와 내용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양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양적 연구의 주요 내용은 2016년 자활기업 조사자료와 2015년 자활기업 정보등록 시스템 자료를 결합 및 활용하여 자활기업 업종 변수를 중심으로 아래에 대한 기초통계분석을 진행하였다. 주요 변수에 대해서

3) 본 연구에서는 자활기업으로 출발해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과 같은 상법상 다른 법적 지위를 갖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 일부 지역자활센터장에게 확인할 결과 가능하다는 확인하였다.

는 이미 앞서 설명한 바와 같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전체적인 자활기업에 대한 특성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것과 함께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을 중심으로 자활기업의 전환에 따른 주요 특성과 성과를 주목하여 분석하였다.

4. 분석결과

1) 사회적경제조직 유형

자활기업으로 출발한 단일유형 사회적경제조직의 유형을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유형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자활기업으로 시작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자활기업상태를 유지한 단일유형 사회적경제조직 자활기업이 1,367개소(77.7%), 자활기업에서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유형을 동시에 취하는 복합유형 사회적경제조직 자활기업이 393개(22.3%)였다. 그리고 복합유형 사회적경제조직의 세부 유형을 살펴보면, 협동조합으로 전환한 단일유형 사회적경제조직 135개(7.7%), 자활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 자활기업 204개(11.6%), 자활기업에서 마을기업으로 바로 전환한 자활기업 4개(0.2%), 자활기업에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형태를 모두 전환한 경험을 가진 자활기업 28개(2.7%), 자활기업에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으로 전환한 경험이 모두 있는 자활기업이 2개(0.1%)로 나타났다.⁴⁾

[표 2] 사회적경제조직 유형

(단위: 개소, %)

		빈도	백분율
단일유형 사회적경제조직	자활기업	1367	77.7
	합계	1367	77.7
복합유형 사회적경제조직	자활기업→협동조합	135	7.7
	자활기업→사회적기업	204	11.6
	자활기업→마을기업	4	0.2
	자활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	48	2.7
	자활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2	0.1
	소계	393	22.3
합계		1760	100.0

※ 분석자료: 2016년 자활기업 전수조사 자료

4) 자활기업에서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전환된 조직 중 두 개 이상, 즉 2-3개의 사업체 성격을 모두 갖는 업체 중 어떤 사회적경제조직으로 먼저 전환되었는지는 명확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본 분석 자료에서 자활기업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으로 공식 전환 인정된 날짜가 일부 조직은 기재되어 있었지만 기재되지 않은 조직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활기업에서 다른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유형 전환된 조직들이 순차적(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으로 전환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여 분석결과를 해석해야 한다.

2) 자활기업과 사회적경제조직 일반적 특성

(1) 자활기업 분포

단일유형 사회적경제조직과 복합유형 사회적경제조직에 속한 업체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 자활기업은 서울시,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순으로 높게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조합과 같은 사회적경제조직은 경기도, 서울시, 강원도 순으로 높게 분포되었다. 이러한 분포는 지자체의 사회적 경제 관심도에 반영된 결과로서,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생성과 발전이 지자체의 관심 및 지원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 자활기업 분포

(단위: 개소, %)

	단일유형 사회적경제조직	복합유형 사회적경제조직	전체
강원도	63(4.6)	37(9.4)	100(5.7)
경기도	115(8.4)	51(13.0)	166(9.4)
경상남도	100(7.3)	28(7.1)	128(7.3)
경상북도	119(8.7)	12(3.1)	131(7.4)
광주광역시	69(5.0)	13(3.3)	82(4.7)
대구광역시	66(4.8)	28(7.1)	94(5.3)
대전광역시	33(2.4)	10(2.5)	43(2.4)
부산광역시	145(10.6)	36(9.2)	181(10.3)
서울특별시	170(12.4)	39(9.9)	209(11.9)
세종특별자치시	7(0.5)	3(0.8)	10(0.6)
울산광역시	27(2.0)	14(3.6)	41(2.3)
인천광역시	43(3.1)	31(7.9)	74(4.2)
전라남도	143(10.5)	23(5.9)	166(9.4)
전라북도	124(9.1)	26(6.6)	150(8.5)
제주특별자치도	15(1.1)	9(2.3)	24(1.4)
충청남도	65(4.8)	15(3.8)	80(4.5)
충청북도	63(4.6)	18(4.6)	81(4.6)
합계	1367(100.0)	393(100.0)	1760(100.0)

$\chi^2=72.306 *p<.001$

※ 분석자료: 2016년 자활기업 전수조사 자료

(2) 자활기업 사업특성

사회적경제조직간 사업특성을 분석한 결과, 첫째, 사회적경제조직간 설립연도를 비교 분석해 살펴보면, 단일유형은 2007년부터 2009년 가장 높은 설립이 된 것으로 분석이 되었다. 복합유형 사회적경제조직들은 2008년과 2013년에 가장 많이 설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

[표 4] 자활기업 사업특성

(단위: 개소, %)

		단일유형 사회적경제조직	복합유형 사회적경제조직	전체	χ^2
설립연도	2002년	17(1.2)	5(1.3)	22(1.3)	$\chi^2=24.588^*$
	2003년	29(2.1)	11(2.8)	40(2.3)	
	2004년	40(2.9)	24(6.1)	64	
	2005년	59(4.3)	16(4.1)	75(4.3)	
	2006년	82(6.0)	26(6.6)	108(6.1)	
	2007년	141(10.3)	32(8.1)	173(9.8)	
	2008년	142(10.4)	57(14.5)	199(11.3)	
	2009년	124(9.1)	26(6.6)	150(8.5)	
	2010년	87(6.4)	22(5.6)	109(6.2)	
	2011년	110(8.0)	32(8.1)	142(8.1)	
	2012년	111(8.1)	35(8.9)	146(8.3)	
	2013년	146(10.7)	47(12.0)	193(11.0)	
	2014년	116(8.5)	29(7.4)	145(8.2)	
	2015년	140(10.2)	24(6.1)	164(9.3)	
	2016년	23(1.7)	7(1.8)	30(1.7)	
	합계	1367(100.0)	393(100.0)	1760(100.0)	
사업 유형	개인사업자	1038(75.9)	70(17.8)	1108	$\chi^2=17.173^*$
	유한회사	33(2.4)	53(13.5)	86	
	주식회사	69(5.0)	137(34.9)	206	
	협동조합	21(1.5)	104	125	
	기타	206(15.1)	29(7.4)	235	
	합계	1367(100.0)	393(100.0)	1760(100.0)	
폐업 여부	폐업하지 않음	1294(94.7)	391(99.5)	1685(95.8)	$\chi^2=17.173^*$
	폐업	72(5.3)	2(0.5)	74(4.2)	
	합계	1366(100.0)	393(100.0)	1759(100.0)	
사업 유지 기간	1년 이하	132(9.7)	29(7.4)	161(9.2)	$\chi^2=10.100^*$
	2년 이하	124(9.1)	28(7.1)	152(8.7)	
	3년 이하	137(10.1)	40(10.2)	177(10.1)	
	4년 이하	132(9.7)	41(10.5)	173(9.9)	
	5년 이하	102(7.5)	30(7.7)	132(7.5)	
	6년 이하	82(6.0)	24(6.1)	106(6.0)	
	7년 이하	126(9.3)	25(6.4)	151(8.6)	
	8년 이하	137(10.1)	48(12.2)	185(10.6)	
	9년 이하	147(10.8)	42(10.7)	189(10.8)	
	10년 이상	242(17.8)	85(21.7)	327(18.7)	
	합계	1361(100.0)	392(100.0)	1753(100.0)	
실무자 참여여부	평균(표준편차)	67.25(42.19)	72.56(42.85)	t=-2.187*	$\chi^2=4.744^*$
	참여하지 않음	444(84.6)	161(74.5)	605(79.6)	
	참여함	100(18.4)	55(25.5)	155(20.4)	
	합계	544(100.0)	216(100.0)	760(100.0)	

* p<.01 ※ 분석자료: 2016년 자활기업 전수조사 자료

적경제조직간 사업유형을 분석하면, 복합유형은 개인사업자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지만, 복합유형 사회적경제조직은 주식회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경제조직 폐업 여부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폐업한 기업은 74개인데, 그 중에서도 단일유형의 폐업률이 복합 사회적경제조직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기업의 유지 기간을 살펴보면, 복합유형은 평균 67개월, 다른 사회적경제조직은 평균 72개월로 복합유형 사회적경제조직의 유지 기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길었다. 기간을 세밀하게 살펴보면, 복합유형은 전체적으로 10년 이상이 17.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9년 이하, 4년 이하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다른 사회적경제조직은 10년 이상이 21.7%로 나타나 자활기업보다 더 오랫동안 장기간 사업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9년 이하, 8년 이하 수준으로 나타나 이 역시도 단일유형보다 유지 기간이 길었다. 다섯째, 지역자활센터의 지원을 통해 성장한 단일유형과 다른 사회적경제조직에 지역자활센터의 실무자가 참여하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자활기업은 18.4%만이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했지만, 복합유형 사회적경제조직은 25.5%가 실무자가 응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자활기업 참여자 특성

544개 단일유형 사회적경제조직과 216개 복합유형 사회적경제조직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의 특성 중 참여자 성별을 살펴보면, 복합유형 사회적경제조직에 참여하는 남성은 3.57명, 여성은 11.49명인데 비해 단일유형 사회적경제조직에 참여하는 남성은 1.13명, 여성은 4.05명으로 더 낮은 고용률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성은 참여자의 연령과 수급형태에서도 높게 나타났다. 주목할 것은 탈수급자의 숫자에서도 단일유형 사회적경제조직보다 복합유형 사회적경제유형의 탈수급률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표 5] 자활기업 참여자 특성

(단위: 명)

		단일유형 사회적경제조직(n=544)		복합유형 사회적경제조직(n=216)		t
		mean	s.d.	mean	s.d.	
성별	남자	1.13	1.37	3.57	4.83	-10.747***
	여자	4.05	17.81	11.49	23.75	-4.160***
연령	20대	.07	.33	.20	.69	-3.363**
	30대	.20	.62	.79	1.47	-5.714***
	40대	1.24	4.82	3.09	5.55	-4.299***
	50대	2.23	9.88	5.25	11.03	-3.502***
	60대	1.00	3.42	3.29	6.80	-4.722***
	70대	.02	.27	.22	.85	-3.383***

수급형태	일반수급자	1.34	.81	1.76	1.61	-1.983*
	조건부수급자	2.09	6.36	2.80	2.40	-1.209
	자활특례	1.36	.68	1.51	.78	-1.140
	차상위	.80	1.27	1.37	2.57	-4.027***
	기타저소득층	2.58	12.62	10.57	21.87	-5.046***
	일반인	.15	1.84	.82	6.99	-1.397
탈수급	탈수급자	.20	.56	.38	1.04	-3.134**

* p<.05 **p<.01 ***p<.001

※ 분석자료: 2016년 자활기업 전수조사 자료. 결측값이 발생한 변수의 사례수: 일반수급자(단일유형 사회적경제조직 87명, 복합유형 사회적경제조직 43명); 조건부수급자(단일유형 사회적경제조직 295명, 복합유형 사회적경제조직 125명); 자활특례(단일유형 사회적경제조직 117명, 복합유형 사회적경제조직 45명) 임.

다음으로 참여자에게 지원되는 인건비 지원에 해당하는 인력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한시적인건비 수급자 및 비수급자 그리고 전문가 인건비 항목에서도 복합유형 사회적경제조직이 단일유형 사회적경제조직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한시적인건비 수급자 수를 비교해보면, 복합유형 사회적경제조직은 5.19명, 단일유형 사회적경제조직 3.18명으로 나타나 복합유형 사회적경제조직에서 한시적 인건비 수급자 수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 참여자 관련 인건비 현황

(단위: 명)

	단일유형 사회적경제조직			복합유형 사회적경제조직			t
	n	mean	s.d.	n	mean	s.d.	
한시적인건비 수급자 수	877	3.18	2.87	237	5.19	4.35	-8.439***
한시적인건비 비수급자 수	56	1.96	1.525	21	4.80	5.89	-3.356**
전문가인건비 지원인원	7	1.57	1.13	8	3.00	3.07	-1.159

* p<.05 ** p<.01 *** p<.001

※ 분석자료: 2016년 자활기업 전수조사 자료. 변수별 총분석사례수는 한시적인건비 수급자(1,014사례), 한시적인건비 비수급자(77사례), 전문가인건비 지원인원(15사례)임.

(3) 자활기업 경제적 특성

① 사회적경제조직 사업예산

단일유형 사회적경제조직과 복합유형 사회적경제조직에게 지원되는 예산의 항목별 지출항목을 분석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복합유형 사회적경제조직이 단일유형 사회적경제조직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주목해야 할 것은 사업자금융자금에서 복합유형 사회적경제조직이 단일유형 사회적경제조직보다 약 두 배 가까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자활기업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으로 인증받으면서 정부의 다양한 정책자금 대상이 될 수 있었기

때문으로 예측된다. 이는 역으로 단일유형 사회적경제조직이 복합유형 사회적경제조직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표 7] 사회적경제조직의 사업예산

(단위: 천원)

	단일유형 사회적경제조직			복합유형 사회적경제조직			t
	n	mean	s.d.	n	mean	s.d.	
사업자금융자금	11	34,466	23,677	10	68,626	33,203	-2.735*
창업자금	1074	52,838	288,208	283	64,307	73,494	-0.664
전세점포임대	272	42,464	49,219	69	51,572	52,246	-1.356
한시적인건비-수급자	878	16,704	16,764	237	28,680	27,151	-8.439***
한시적인건비-비수급자	55	6,430	3,974	20	67,613	170,676	-2.689***
전문가인건비	7	22,853	36,530	8	48,729	58,208	-1.012
사업자금이자보전	5	22,956	26,869	5	178,156	275,077	-1.256
기계설비비	42	19,475	17,071	18	24,555	20,781	-0.989
시설보강비	29	11,154	12,864	15	16,066	15,338	-1.124

* p<.05 ** p<.01 *** p<.001

※ 분석자료: 2016년 자활기업 전수조사 자료. 변수별 총분석사례수는 사업자금융자금(21사례), 창업자금(1,357사례), 전세점포임대(341사례), 한시적인건비_수급자 1,115사례), 한시적인건비_비수급자(75사례),전문가인건비(15개소), 사업자금이자보전(10개소), 기계설비비(60사례), 시설보강비(44사례)임.

② 자활기업의 매출특성

단일유형 사회적경제조직과 복합유형 사회적경제조직의 성과를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가 바로 매출액이라고 할 수 있다. 특정 시점에서의 단일유형 사회적경제조직의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첫째, 매출액이 단일유형 사회적경제조직 연계 총매출에서 복합유형 사회적경제조직의 금액이 자활기업보다 약 2배 정도 더 높게 나왔다. 둘째, 매출액 중 단일유형 사회적경제조직과 관련이 없는 금액에서 복합유형 사회적경제조직이 단일유형 사회적경제조직보다 약 2배 정도 높은 실적을 보인다. 이처럼 복합유형 사회적경제조직이 단일유형 사회적경제조직보다 경제적 성과가 높은 것은 자활기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성장한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이와 동시에 정부나 지자체로부터의 다양한 정책 및 예산, 행정 측면에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두 조직의 경제적 성과 차이를 해석하고자 할 때는 세밀한 주의가 필요함과 동시에 관련한 심도 있는 연구가 추가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표 8] 자활기업의 매출특성

(단위: 천원)

	단일유형 사회적경제조직(n=544)		복합유형 사회적경제조직(n=216)		t
	mean	s.d.	mean	s.d.	
자활연계매출총액	13,983	49,695	32,285.69	79,834	-3.137**
외부매출총액	65,796	197,871	210,632.89	352,168	-5.698***

* p<.05 ** p<.01 *** p<.001

※ 분석자료: 2015년 자활기업등록시스템 자료

3) 자활기업의 전환 유형에 따른 특성 분석

자활기업으로 출발하여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그리고 자활기업을 포함한 복합유형의 사회적경제조직으로 변화를 보인 자활기업을 분류한 결과 다섯 가지 유형이 있었다. 다음은 다섯 가지 유형에 따른 주요 변수와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1) 사회적경제조직 세부 유형에 따른 일반적 특성

① 사회적경제조직 분포

자활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가장 많은 204개 기업으로, 경기도, 강원도, 인천시, 부산시 순으로 높은 분포를 보였다. 다음으로 자활기업에서 협동조합으로 전환한 135개 업체 중 서울시, 대구시, 전라남도 순으로 높은 분포를 보였다. 그리고 자활사업에서 마을기업 그리고 자활기업에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모두를 참여하고 있는 업체가 48개나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까지 모두 인정받은 업체가 4개 있다는 것도 질적 차원에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다.

[표 9] 사회적경제조직 분포

(단위: 개소, %)

	자활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합계
강원도	9(6.7)	24(11.8)	-	4(8.3)	-	37(9.4)
경기도	15(11.1)	28(13.7)	1(25.0)	7(14.6)	-	51(13.0)
경상남도	4(3.0)	14(6.9)	1(25.0)	8	1(50.0)	28(7.1)
경상북도	5(3.7)	7(3.4)	-	-	-	12(3.1)
광주광역시	4(3.0)	6(2.9)	-	3(6.3)	-	13(3.3)
대구광역시	19(14.1)	5(2.5)	-	4(8.3)	-	28(7.1)

대전광역시	6(4.4)	3(1.5)	1(25.0)	-	-	10(2.5)
부산광역시	14(10.4)	22(10.8)	-	-	-	36(9.2)
서울특별시	22(16.3)	10(4.9)	-	6(12.5)	1(50.0)	39(9.9)
세종특별자치시	1(0.7)	2(1.0)	-	-	-	3(0.8)
울산광역시	9(6.7)	5(2.5)	-	-	-	14(3.6)
인천광역시	3(2.2)	24(11.8)	-	4(8.3)	-	31(7.9)
전라남도	17(12.6)	5(2.5)	-	1(2.1)	-	23(5.9)
전라북도	4(3.0)	20(9.8)	1(25.0)	1(2.1)	-	26(6.6)
제주특별자치도	-	8(3.9)	-	1(2.1)	-	9(2.3)
충청남도	-	10(4.9)	-	5(10.4)	-	15(3.8)
충청북도	3(2.2)	11(5.4)	-	4(8.3)	-	18(4.6)
합계	135(100.0)	204(100.0)	4(100.0)	48(100.0)	2(100.0)	393(100.0)

※ 분석자료: 2016년 자활기업 전수조사 자료

② 사회적경제조직 사업특성

사회적경제조직 유형에 따른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첫째,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연도를 분석한 결과, 협동조합은 2012년부터 최근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사회적기업은 2008년과 2007년, 2011년에 전환이 이루어진 업체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사회적경제조직의 사업유형은 자활기업-협동조합으로 전환기업은 60%가 협동조합과 개인사업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자활기업-사회적기업 업체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마을기업은 사례 수가 적지만 응답자의 50%에 해당하는 업체가 개인사업으로 등록되어 있다. 그리고 주목할 것은 자활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형태를 일부 또는 모두 포함한 기업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셋째, 사회적경제조직의 사업 유지 기간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10년 이상의 비율이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협동조합은 10년 이상과 1년 미만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기업 역시 8년~9년 이상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자활기업을 시작으로-사회적기업-협동조합을 경험한 업체 역시 8년 이상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자활기업으로 출발한 업체들이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사업 유지 기간을 늘려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2016년 2월 시점을 기준으로 사회적기업조직의 폐업 상황을 분석한 결과 기업의 대부분이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사회적경제조직 사업특성

(단위: 개소, %)

		자활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합계
설립 연도	2002년	2(1.5)	2(1.0)	-	1(2.1)	-	5(1.3)
	2003년	3(2.2)	6(2.9)	-	2(4.2)	-	11(2.8)
	2004년	8(5.9)	7(3.4)	-	8(16.7)	1(50.0)	24()
	2005년	7(5.2)	9(4.4)	-	0	-	16(4.1)
	2006년	10(7.4)	13(6.4)	-	2(4.2)	1(50.0)	26(6.6)
	2007년	3(2.2)	23(11.3)	-	6(12.5)	-	32(8.1)
	2008년	9(6.7)	40(19.6)	-	8(16.7)	-	57(14.5)
	2009년	4(3.0)	18(8.8)	-	4(8.3)	-	26(6.6)
	2010년	4(3.0)	16(7.8)	1(25.0)	1(2.1)	-	22(5.6)
	2011년	2(1.5)	26(12.7)	-	4(8.3)	-	32(8.1)
	2012년	13(9.6)	19(9.3)	2(50.0)	1(2.1)	-	35(8.9)
	2013년	24(17.8)	15(7.4)	1(25.0)	7(14.6)	-	47()
	2014년	18(13.3)	8(3.9)	-	3(6.3)	-	29(7.4)
	2015년	21(15.6)	2()	-	1(2.1)	-	24(6.1)
2016년	7(5.2)	-	-	-	-	7(1.8)	
	합계	135(100.0)	204(100.0)	4(100.0)	48(100.0)	2(100.0)	393(100.0)
사업 유형	개인사업자	45(33.3)	21(10.3)	2(50.0)	2(4.2)	-	70(17.8)
	유한회사	0	43(21.1)	1(25.0)	9(18.8)	-	53(13.5)
	주식회사	6(4.4)	111(54.4)	1(25.0)	18(37.5)	1(50.0)	137(34.9)
	협동조합	81(60.0)	3(1.5)	-	19(39.6)	1(50.0)	104(26.5)
	기타	3(2.2)	26(12.7)	-	-	-	29(7.4)
	합계	135(100.0)	204(100.0)	4(100.0)	48(100.0)	2(100.0)	393(100.0)
폐업여부	폐업하지않음	135(100.0)	202(99.0)	4(100.0)	48(100.0)	2(100.0)	391(99.5)
	폐업함	-	2(1.0)	-	-	-	2(0.5)
	합계	135(100.0)	204(100.0)	4(100.0)	48(100.0)	2(100.0)	393(100.0)
사업 유지 기간	1년이하	26(19.4)	2(1.0)	-	1(2.1)	-	29(7.4)
	2년이하	18(13.4)	7(3.4)	-	3(6.3)	-	28(7.1)
	3년이하	22(16.4)	10(4.9)	1(25.0)	7(14.6)	-	40(10.2)
	4년이하	16(11.9)	22(10.8)	2(50.0)	1(2.1)	-	41(10.5)
	5년이하	1(0.7)	25(12.3)	-	4(8.3)	-	30(7.7)
	6년이하	4(3.0)	18(8.8)	1(25.0)	1(2.1)	-	24(6.1)
	7년이하	5(3.7)	17(8.3)	-	3(6.3)	-	25(6.4)
	8년이하	8(6.0)	32(15.7)	-	8(16.7)	-	48(12.2)
	9년이하	2(1.5)	33(16.2)	-	7(14.6)	-	42(10.7)
	10년이상	32(23.9)	38(18.6)	-	13(27.1)	2(100.0)	85(21.7)
	합계	134(100.0)	204(100.0)	4(100.0)	48(100.0)	2(100.0)	392(100.0)
	평균 (표준편차)	56.2(48.3)	80.5(35.1)	43.7(16.8)	84.2(43.8)	126.5(21.9)	78.2(33.18)
실무자 참여여부	참여하지않음	52(71.2)	85(77.3)	3(100.0)	19(67.9)	2(100.0)	161(74.5)
	참여함	21(28.8)	25(22.7)	-	9(32.1)	-	55(25.5)
	합계	73(100.0)	110(100.0)	3(100.0)	28(100.0)	2(100.0)	216(100)

※ 분석자료: 2016년 자활기업 전수조사 자료

(2) 자활기업 참여자 특성

① 사회적경제조직 참여자 특성

사회적경제조직 참여자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경제조직 네 가지 유형 간 성별, 연령, 수급자 형태 요인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남성 참여자의 비율은 사회적기업, 자활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 모델에서 협동조합과 마을기업보다 높았다. 여성의 비율은 사회적기업 조직이 다른 조직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둘째,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사회적기업 조직이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높은 비율을 보인다. 그중에서도 50대와 60대 비율이 눈에 띄게 높았다. 셋째, 수급자의 형태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기업 조직에서 조건부수급자 비율이 높았다. 또한, 차상위계층 수는 사회적기업 조직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적기업 조직이 다른 조직보다는 여성 참여자, 50대 이상 중장년층, 조건부수급자 수 및 차상위자 수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11] 사회적경제조직 참여자 특성

(단위: 명)

		협동조합 (n=73)		사회적기업 (n=110)		마을기업 (n=3)		자활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 (n=28)		F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성별	남자	2.17	1.75	4.33	6.21	3.33	3.51	4.0	3.03	2.669*
	여자	2.12	3.81	18.88	29.59	3.66	3.05	8.35	20.83	6.342**
연령	20대	.06	.30	.20	.74	.33	.57	.46	1.03	2.441*
	30대	.31	.54	1.02	1.81	1.0	1.00	1.00	1.27	4.787**
	40대	1.06	1.12	4.58	7.11	2.66	2.30	2.71	4.15	4.139**
	50대	1.47	1.47	7.99	13.86	2.00	1.73	4.78	10.82	4.139**
	60대	.93	2.77	5.10	8.34	.33	.57	2.78	6.08	4.667**
	70대	.10	.82	.30	.93	.66	1.15	.17	.54	.874
수급형태	일반수급자	1.33	.51	1.90	1.86	-	-	1.40	.54	.295
	조건부수급자	2.00	1.22	3.51	2.96	4.00	-	2.50	1.78	3.275**
	자활특례	1.53	.63	1.57	.90	-	-	1.00	.00	.938
	차상위	.50	.88	1.90	3.22	.66	.57	1.75	2.33	3.733**
	기타저소득층	2.09	3.44	16.90	27.64	5.00	5.00	8.57	18.02	5.600**
	일반인	.01	.11	1.51	9.76	.00	.00	.39	.78	.555
	탈수급자	.32	.76	.43	1.26	.66	.57	.21	.56	1.567

* p<.05 ** p<.01 *** p<.001

※ 분석자료: 2016년 자활기업 전수조사 자료. 결측값이 발생한 변수의 총 사례수는 일반수급자(협동조합 6명, 사회적기업 31명, 마을기업 0명, 자활기업-사회적기업-마을기업 5명); 조건부수급자(협동조합 46명, 사회적기업 62명, 마을기업 1명, 자활기업-사회적기업-마을기업 14명); 자활특례(협동조합 15명, 사회적기업 26명, 마을기업 0명, 자활기업-사회적기업-마을기업 5명) 임.

(3)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제적 특성

① 사회적경제조직의 사업예산

사회적경제조직의 유형에 따른 경제적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2] 사회적경제조직의 사업예산

(단위: 천원)

		n	mean	s.d.	F
사업자금용자 합계	자활기업→협동조합	-	-	-	.386
	자활기업→사회적기업	4	61,567	36,772	
	자활기업→마을기업	-	-	-	
	자활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	5	78,000	34,928	
	자활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1	50,000	-	
	합계	10	68,627	33,203	
창업자금	자활기업→협동조합	92	59,280	65,407	1.193
	자활기업→사회적기업	153	71,619	84,123	
	자활기업→마을기업	3	78,755	60,358	
	자활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	34	45,025	27,661	
	자활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1	20,436	-	
	합계	283	64,307	73,494	
전세점포임대	자활기업→협동조합	24	48,250	31,219	.498
	자활기업→사회적기업	33	59,784	69,232	
	자활기업→마을기업	2	32,500	38,891	
	자활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	9	36,911	18,424	
	자활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1	30,436	-	
	합계	69	51,572	52,247	
한시적인건비	자활기업→협동조합	79	25,600	23,463	.642
	자활기업→사회적기업	126	30,670	29,163	
	자활기업→마을기업	4	34,656	42,948	
	자활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	28	27,564	25,650	
	자활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	-	-	
	합계	237	28,681	27,151	
한시적인건비	자활기업→협동조합	7	6,569	3,880	1.865
	자활기업→사회적기업	8	47,013	72,215	
	자활기업→마을기업	-	-	-	
	자활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	5	186,038	322,987	
	자활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	-	-	
	합계	20	67,614	170,677	

전문가인건비	자활기업→협동조합	1	7,220	.	.440
	자활기업→사회적기업	3	72,019	62,813	
	자활기업→마을기업	-	-	-	
	자활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	4	41,640	63,968	
	자활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	-	-	
	합계	8	48,730	58,209	
사업자금이자보전	자활기업→협동조합	0	.	.	1.291
	자활기업→사회적기업	3	288,351	325,256	
	자활기업→마을기업	-	-	-	
	자활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	2	12,864	4,050	
	자활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	-	-	
	합계	5	178,156	275,078	
기계설비비	자활기업→협동조합	4	14,879	16,578	.583
	자활기업→사회적기업	9	25,943	24,050	
	자활기업→마을기업	-	-	-	
	자활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	5	29,798	18,443	
	자활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	-	-	
	합계	18	24,555	20,781	
시설보강비	자활기업→협동조합	2	7,994	7,063	.551
	자활기업→사회적기업	8	17,126	14,525	
	자활기업→마을기업	-	-	-	
	자활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	4	21,337	21,107	
	자활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1	2,643	-	
	합계	15	16,066	15,339	

※ 분석자료: 2016년 자활기업 전수조사 자료

② 사회적경제조직의 매출특성

사회적경제조직의 매출특성 차이를 자활 연계매출액과 외부매출액 변수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첫째, 자활 연계매출 총액 간 차이를 보면, 자활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모델이 다른 유형보다 매출액이 매우 많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자활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 모델의 자활 연계 매출이 많았다. 이는 자활기업으로 출발한 기업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형태로 전환함으로써 기존 자활 관련 사업정보 및 유통, 마케팅 등의 요소들이 현 사업모델에서의 경제적인 성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자활 연계 외 외부 매출총액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자활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만 전환한 경우 매출액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자활기업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모두 전환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자

활 연계매출액과 외부매출액을 비교했을 때, 자활 연계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고 자활 기업으로 시작한 기업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그리고 마을기업으로 전환되면서 경제적인 성과도 매우 높게 증가하였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표 13] 사회적 경제조직의 매출특성

(단위: 천원)

		n	man	s.d.	F
자활 연계 매출총액	자활기업→협동조합	73	30,686	59,870	11.411***
	자활기업→사회적기업	110	23,515	66,175	
	자활기업→마을기업	3	5,000	8,660	
	자활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	28	49,921	67,108	
	자활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2	367,035	519,065	
	합계	216	95,231	144,175	
외부매출 총액	자활기업→협동조합	73	61,030	83,215	6.439***
	자활기업→사회적기업	110	315,034	450,157	
	자활기업→마을기업	3	194,173	121,726	
	자활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	28	205,278	206,066	
	자활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2	28,673	40,550	
	합계	216	160,837	180,342	

*p<.05 **p<.01 ***p<.001

※ 분석자료: 2015년 자활기업등록시스템 자료.

5. 결론

자활기업으로 출발한 조직들이 어떠한 형태의 사회적경제조직 모습을 가졌는지를 분석한 결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 자활기업으로 출발한 조직 중 현재까지 지속해서 자활기업상태를 유지한 단일유형 사회적경제조직(single-type social economy organization) 업체가 약 1,367개소(77.7%), 자활기업에서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유형 전환된 복합유형 사회적경제조직(plural-type social economy organization)이 393개소(22.3%)였다. 그리고 복합유형 사회적경제조직의 세부 유형을 살펴보면, 협동조합으로 전환한 단일유형 사회적경제조직 135개소(7.7%), 자활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 자활기업 204개소(11.6%), 자활기업에서 마을기업으로 바로 전환한 자활기업 4개소(0.2%), 자활기업에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형태를 모두 전환한 경험을 가진 자활기업 28개소(2.7%), 자활기업에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으로 전환한 경험이 모두 있는 자활기업이 2개소(0.1)로 나타났다. 둘째, 지자체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해

관심이 많은 지역에서 자활기업들이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전환하여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자활기업에서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전환한 조직들의 사업 유지 기간이 비교적 길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 역시도 각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넷째, 복합유형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자활기업으로만 있는 조직들보다 지역자활센터 실무자의 참여비율이 높았다. 이는 지역자활센터 실무자의 관심과 지원이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전환 이후 정착률하고 안정궤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다섯째, 자활사업 연계 총매출에서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의 금액이 자활기업보다 약 2배 정도 더 높았다. 또한, 매출액 중 자활사업과 관련이 없는 금액에서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이 자활기업보다 약 2배 정도 높은 실적을 보인다. 이는 현재 사업을 자활기업으로 유지하고 있는 기업보다 자활기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더욱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한 업체의 매출액이 더 높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시켜준다. 여섯째, 사회적경제조직 중 사회적기업 조직이 다른 조직보다는 여성 참여자 수, 50대 이상 중장년층 비율,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자 수에서 매우 높았다. 이는 사회적경제조직 중 사회적기업이 여성 참여자나 중고령자 그리고 조건부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조직간의 매출특성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자활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모델이 다른 유형보다 매출액이 매우 많이 증가하였고, 다음으로 자활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 모델이 높은 자활 연계 매출총액을 보였다. 이는 자활기업으로 출발한 기업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형태로 전환함으로써 기존 자활 관련 사업정보 및 유통, 마케팅 등의 요소들이 현 사업모델에서의 경제적인 성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자활 연계 외 외부 매출총액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자활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만 전환한 경우 매출액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자활기업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형태를 동시에 취하고 있는 조직의 매출액이 높았다. 전체적으로 자활 연계매출액과 외부매출총액을 비교했을 때, 자활 연계매출액의 비율이 더 높다는 사실과 함께 자활기업으로 시작한 기업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그리고 마을기업으로 전환되면서 경제적인 성과도 매우 높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주요 결과에 따른 본 연구의 주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활기업으로 출발한 기업 중 상당수의 사회적경제조직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확장하고 있는 현실을 확인하였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자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기업 지원센터들이 사회적경제조직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는 것이 사실이다.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실질적인 사업비 지원, 컨설팅, 모니터링 등의 다양한 지원을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제공하고 있다. 현재 자활기업 참여자의 근로 능력 및 자활기업

업종의 경쟁력 등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고려할 때, 자활기업이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사회적경제조직의 관점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현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활기업이 현실적인 문제를 타개하는 방안으로 정부나 지자체와 연계하여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의 모습으로 전환되는 것은 자활기업의 유지와 발전 측면에서 이롭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자활기업이 끊임없이 제도권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경제조직 모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에서 언급하였듯이, 일부 자활기업은 단순히 1개의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전환한 것이 아니라 2개 형태 또는 3개 이상의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전환하였다. 물론 이는 자활기업으로 시작한 기업들이 현실적인 문제인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더 받기 위한 몸부림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경제조직 성격을 법적으로 갖추으로써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관련한 법과 제도 그리고 지원에 있어서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 경험을 가진 자활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이러한 현상이 가져올 수밖에 없는 부정적 결과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자활기업에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형태로 이행하거나 복합적 조직형태를 갖춘 조직이 일정 기간 받았던 다양한 법, 행정, 예산 지원이 끊어져서 기업을 폐업한 예도 허다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자활기업이 다른 형태의 사회적경제조직으로의 성격을 함께 인증받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자활기업 인정 이후 지속해서 자활기업 상태만을 유지한 단일유형 사회적경제조직과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전환한 복합유형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특성 차이를 분석한 결과, 복합유형 사회적경제조직이 일자리 창출 및 매출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자활기업이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전환함으로써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적, 행정적 도움을 받고, 그 결과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성과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의 등장은 기존 시장경제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저소득 빈곤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그동안 자활기업에 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가장 최근의 전국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했다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여전히 2차 자료 분석이라는 한계로 인해 자활기업 및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내용을 분석하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가 보다 최신 자료가 아님에 따라 연구의 결과를 지금 현실에 바로 적용하는 데에는 제한점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향후 본 연구가 가진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더욱 자활기업이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

■ 참고문헌 ■

- 기획재정부 (2018). 제3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
- 김경휘 (2016). 자활기업 조사자료를 활용한 자활기업 특성분석 연구. 중앙자활센터·예수대학교.
- 김의영·임기홍 (2015). 한국 사회적경제조직 지형도. *Oughtopia*, 30(1), 61-92.
- 김정원 (2012). 자활공동체의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한 연구: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20(2), 67-89.
- 김정원 (2017). 한국의 사회적경제 조직화 특성에 대한 분석. *경제와사회*, 114, 79-121.
- 김정원 (2018). 노동통합사회적기업의 측면에서 살펴본 자활기업의 현실과 과제. *경제와 사회*, 118, 213-239.
- 김학실 (2017). 사회적 경제 제도화 과정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입법 과정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7(1), 27-61.
- 김현승 (2001). 생산자 협동조합 조직의 비교 연구. *한국사회학*, 35(4), 95-127.
- 백학영·김경휘·한경훈 (2018). 지역사회활센터의 사회적협동조합 전환과정과 변화에 대한연구. *한국사회정책*, 25(4), 265-299.
- 백학영·조성은 (2009). 자활공동체의 사회적 기업 전환 가능성에 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36(3), 269-297.
- 백학영·조성은 (2012). 자활사업 참여자의 수급 지위와 노동시장 지위 변동. *사회복지연구*, 43(1), 143-178.
- 백학영·조성은·김경휘·박경하 (2010). 창업공동체의 지속과 성장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 조합 지원 공동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7(2), 269-297.
- 보건복지부 (2017a). 기초생활보장 자활급여 기본계획(2018-2020).
- 보건복지부 (2017b). '20년까지 예비사회적기업 300개 지정추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 11. 09.
- 보건복지부 (2018). 자활기업으로 2만여 개 일자리 만든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8. 07. 26.
- 설지원·신원식 (2015). 자활사업의 방향성: 사회적경제 조직으로의 전환에 대한 핵심 실무자들의 인식 유형. *사회보장연구*, 31(4), 139-159.
- 신명호·김정원·문보경·장원·조성은·엄형식 (2012). 자활사업 협동조합 모형 개발 및 발전방안. 사회투자지원재단 부설 사회경제연구센터
- 엄형식 (2008). 한국의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 - 유럽 경험과의 비교와 시사. *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 일하는 사회*.
- 이경미·정원오 (2017). 서울시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유형 및 특성 연구: 퍼지셋 이상형 분석의 적용. *사회복지정책*, 44(1), 135-160.
- 이은선·석호원 (2017). 국내 사회적경제조직의 유형에 관한 연구: 퍼지셋 이념형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7(4), 179-213.
- 이인재 (2006). 사회적 기업 성공요인과 사회적 기업 컴윈, 통합적 사회정책 대안 연구, 한신대학교 출판부.
- 이현주 (2016a). 자활기업에서 성장한 사회적기업의 기업운영 경험: 근거이론을 바탕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8(1), 169-191.
- 이현주 (2016b). 협동조합기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생존전략에 관한 연구.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5(2), 67-95.
- 이현주·민윤경 (2015). 사회적기업의 제도적 동형화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충북지역 자활기업의 사례를

-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5(3), 515-552.
- 장원봉 (2006). 사회적경제의 이론과 실제. 나눔의 집.
- 진재문 (2008). 자활사업의 사회적 기업 전환에 관한 연구: 안정적 이익 창출을 위한 사회적 자원의 활용 전략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4(4), 221-248.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9). 2019년 3월 사회적기업 인증 현황. http://www.socialenterprise.or.kr/kosea/company.do?dep1_kind=1
-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2006). 자활사업 종합보고서.
- 한상진 (2006a).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자활공동체의 성격과 발전 방향. 시장과 국가를 넘어서: 사회적 기업을 통한 자활의 전망. UUP.
- 한상진 (2006b). 시민 민주주의의 경제적 토대를 찾아서: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자본 모델에 근거한 자활공동체의 대안. 시장과 국가를 넘어서: 사회적 기업을 통한 자활의 전망. UUP.
- 행정안전부 (2018). 마을기업 고용인원 및 매출액. <https://www.mois.go.kr/frt/sub/a05/statistics/screen.do>.
- 행정안전부 (2019). 지방정부의 조례나 재정현황. 자치법규정보시스템 www.elis.go.kr
- 홍성우 (2011). 우리나라 근로연계복지사업의 제도적 연계성 분석: 자활사업과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11(3), 413-439.
- 황미영 (2007). 사회적 경제조직으로서의 자활공동체의 실태와 전망, 시민사회와 NGO. 5(2), 73-104.
- 황미영 (2009). 간병 자활공동체의 사회적 기업으로의 조직화 동기와 전략: '부산 돌봄 사회서비스센터'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5(4), 1-24.
- 황정임·송치선 (2006). 자활공동체 유형별 빈곤여성의 자활 경험에 관한 연구: 자활공동체가 갖는 대안적 일자리로서의 가능성 탐색. 여성연구. 65, 82-120.
- Mahoney, James & Kathleen Thelen.(eds.) (2010). Explaining Institutional Change: Ambiguity, Agency, and Pow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oelants Bruno (2002). Praha Social Economy 2002, Enlarging the Social Economy. CECOP.

Abstract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self-sufficiency enterprise according to social economy organization type

KyoungHuy Kim* & Hakyoun Baek**

no small self-sufficiency enterprises were layered another social economy organization certification although they were social economy organization in itself. This study comparatively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ypes of self-sufficiency enterprises as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This study comparatively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self-sufficiency enterprises after dividing them into single-type SEO(social economy organization) that were certified for only self-sufficiency enterprise and plural-type SEO that were certified for another SEO such as social enterprise, cooperative, and community-based enterprises. This study used census of self-sufficiency enterprises in 2016 and data of the Self-sufficiency Enterprises Information System in 2015. The key results follows, Firstly, 1,367 cases (77.2%) among 1,760 cases were certified for another SEO in addition. Secondly, some self-sufficiency enterprises were additionally certified more than two or three for SEOs. Lastly, the plural-type SEOs showed rich performance in job creation, participation rate of women and vulnerable people and sales more than single-type SEOs.

Key words: social economy, self-sufficiency enterprise, social enterprise, cooperative, community-based enterprises

◆ 2019. 4. 30. 접수 / 2019. 6. 22. 1차수정 / 2019. 6. 29. 게재확정

* First author, Associate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Jesus University (ohomimi@jesus.ac.kr)

** Corresponding author, Associate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hywhite@kangwon.ac.kr)